

대학평가위원회규정

제정	1999. 3.
개정	2007. 9.
개정	2013. 1.

제1장 총 칙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우송대학교(이하 ‘본 대학’이라 한다.)의 교육체계 및 조직운영 전반을 포함한 학교의 질적 수준을 체계적으로 평가하여 대학교육의 수월성, 효율성, 책무성, 자율성, 협동성을 제고하고 평가결과를 활용하여 대학의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이다.

제2조 (조직) 제1조의 소기 목적달성과 자체평가의 기획, 연구를 위해 대학자체평가 기획위원회와 대학 자체평가 연구위원회를 둔다.

제3조 (부서의 협조) 각 위원회는 위원장의 승인을 얻어 관계 부서 및 관계인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요구 및 협조를 구할 수 있으며 해당 부서 또는 관계인은 이의 요청에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4조 (기밀유지) 각 위원회의 위원 및 회의의 참석자는 회의내용 및 제반자료에 관하여 기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2장 대학자체평가 기획위원회

제5조 (설치목적) 대학자체평가 기획위원회는 대학자체평가를 기획하고 자체평가보고서를 심의하기 위하여 설치·운영한다.

제6조 (명칭) 본 위원회는 우송대학교 대학자체평가 기획위원회라 칭한다.

제7조 (구성) ①대학자체평가 기획위원회의 구성은 다음 각 호에 의거 구성한다.

1. 위원회의 위원은 교무위원으로 구성한다.
2. 위원장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개정 2013. 01. 01)

제8조 (임기) 위원의 임기는 보직 재임기간으로 하되 교외인사는 1년으로 한다.

제9조 (임무)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대학 자체평가 기획
2. 대학평가 지원
3. 자체평가 보고서 심의에 관한 사항
4. 평가결과에 대한 대학발전위원회 보고 및 대학교육개선의 총장 자문·보좌

제10조 (회의소집)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소집할 수 있다.

1. 재적 위원 과반수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2. 총장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3.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제11조 (구성원 참여) 위원장은 대학자체평가 기획 및 심의를 위해 교수, 직원, 학생 등 대학 구성원을 위원회에 참석하도록 함으로써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12조 (의결) 본 위원회는 의결은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가부동수일 때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제3장 대학자체평가 연구위원회

제13조 (설치목적) 대학자체평가 연구위원회는 대학자체평가 업무 수행 및 보고서 작성을 위하여 설치·운영한다.

제14조 (명칭) 본 위원회는 우송대학교 대학자체평가 연구위원회라 칭한다.

제15조 (구성) 각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의거 구성한다.

1. 대학자체평가 연구위원회 위원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2. 필요에 따라 교외인사를 위원장의 제청으로 총장이 위촉할 수 있다.

제16조 (임기)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교외인사는 2년으로 한다.

제17조 (임무)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대학자체평가 업무 수행
2. 대학자체평가보고서 영역별 수집자료 목록작성 및 분석평가
3. 위 각 호에 연관되는 사항

제18조 (회의소집)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소집할 수 있다.

1. 재적 위원 과반수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2. 총장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3.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제19조 (의결) 본 위원회는 의결은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가부동수일 때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제20조 (업무관할) 본 업무는 기획처에서 담당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199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07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